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5급 이상 정·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기 관 명 인천 , 인천 , 인천 중구, 인천 인천  
인천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고,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자치구의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일부 군·자치구에서 정·현원 간 직렬 불일치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인천 , 인천 , 인천 중구청장, 인천 , 인천  
, 인천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인천	장	행정·시설 5급	해양수산 5급	
인천	과장	행정·사회복지5급	농업5급	
	과장	행정·환경5급	보건5급	
	과장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5급	보건진료5급	
인천 중구	보건행정과장	행정·보건·간호5급	약무5급	
인천	장	행정·시설·간호5급	사회복지5급	
인천	과장	행정5급	공업5급	
	과장	행정5급	사회복지5급	
	과장	행정5급	공업5급	
	동장	행정·시설5급	보건5급	
	동장	행정·복지5급	시설5급	
	동장	행정5급	의료기술5급	
인천	의사	의무5급	의무4급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기 관 명 인천 중구, 인천

내 용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을 2019년도~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추진요령, 매뉴얼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정 취지에 맞게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지침에 따른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확충인력 중 일부는 임용 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내용 : 붙임)

### 조치할 사항

인천 중구청장, 인천                    께서는

기 배정된 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주공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사례 >

자치 단체명	확충인력			배치당시 담당업무	비고
	정원조례 개정일	부서명	성명		
인천 중구	'19. 2. 18.	총무과	한○○	부단체장 회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인터넷 건의사항 처리	
	'21. 7. 1.	신포동	권○○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일반, 제증명, 세외수입 일반, 외국인업무, 통합민원	
	'21. 7. 1.	도원동	안○○	주민등록일반, 가족관계등록, 민원지적과 및 일자리경제과 업무, 통합민원 발급	
	'21. 7. 1.	개항동	김○○	서무 일반, 일자리경제과 업무, 기획, 감사, 미래전략, 홍보체육실, 총무, 보안	
	'21. 7. 1.	용유동	이○○	서무 일반, 보안, 기록물, 선거(서기), 통·반 장 및 자생단체 관리, 기획, 감사, 총무	
인천	'21. 1. 11.	과	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추진,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 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등	
	'21. 1. 11.	동	박○○	통합민원창구(제증명 발급), 등·초본, 인감	
	'21. 5. 3.	동	황○○	통합민원	
	'21. 5. 3.	동	강○○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증기 수입,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등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 , 인천 , 인천 중구, 인천 인천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2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 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구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규칙 개정 등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인천                    인천                    인천 중구청장, 인천                    인천  
인천                    , 인천                    인천                    인천                    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인천	자치분권협의회		○		1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대상 선정위원회			○	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6
인천	자가진 단제도실무위원회			○	10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7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15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0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8
	장운영위원회			○	13
	갯벌센터운영위원회			○	1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	13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0
인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7
	운영위원회			○	14
인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4
인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15
	관광진흥위원회			○	13
인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	9
인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10
인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1
	편찬위원회			○	0
	축제위원회			○	0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		8
	안전한마을협의회			○	1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0
	도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위원회			○	9
	노사민정협의회		○		14
	식생활교육위원회		○		13